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20-33호

**- 2020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 등 일정 공고**

2020년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 등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중앙소방학교장**

**I . 필기시험 합격자**

**1. 합격자 응시번호**

가. 화학분야 (소방교)

701-0001                      701-0003                      701-0004                      701-0005

나. 화학분야 (소방사)

801-0001                      801-0002                      801-0004                      801-0005  
 801-0007                      801-0010                      801-0011                      801-0013  
 801-0014

다. 구조분야 (소방사)

501-0003                      501-0004

라. 구급분야 (소방사)

601-0003                      601-0005                      601-0008                      601-0015  
 601-0016                      601-0027                      601-0033

**2. 필기시험 응시율 및 합격선**      ※ 합격선은 가점을 포함한 과목 합산점수임

구분	채용예정인원	원서접수인원	필기시험응시인원	필기시험응시율	필기시험합격인원	합격선
계	15	90	31	34.4%	22	-
화학(소방교)	3	6	4	66.7%	4	220
화학(소방사)	6	20	13	65.0%	9	205
구조(소방사)	3	28	5	17.9%	2	비공개*
구급(소방사)	3	36	9	25.0%	7	185

\* 합격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타인의 점수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구조분야 합격선을 비공개함

## II. 체력시험

### 1. 체력시험 (종목별 점수, 세부측정 방법 등은 붙임 5, 5-1 참고)

가. 등록일시 : 7. 16.(목) 09:00 ~ 09:30

※ 등록 마감시각(09:30)까지 입실 완료 (시간 초과 시 입실 절대 불가)

나.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실내종합체육관

다. 시험대상 : 총 22명 (필기시험 합격자)

라. 시험종목 : 6종목\*

\* 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 응시표 출력 : 7. 9.(목) 14:00 이후 (119고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신분증 미지참자 응시 불가)

### 2. 도핑테스트 (도핑테스트 안내문 등은 붙임 6, 6-1, 6-2, 6-3 참고)

가. 채취일시 : 7. 16.(목) 체력시험 종료 후

나. 채취장소 : 중앙소방학교 실내종합훈련장 내

다. 채취대상 : 2명 (체력시험 당일 추첨을 통한 무작위 선정)

라. 채취시료 : 소변 90ml 이상

마. 시료검사 : 시료 소변을 장비이용 요비중 검사(시료 봉인)

바. 시료운송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핑테스트 의뢰

사. 동의서 징구 :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아. 이의제기 : 도핑테스트 분석 결과 비정상인 응시자에 이의신청 기회 부여

### 3.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7. 21.(화) 14:00

나. 공고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 <체력시험 합격기준>

◇ 6종목 평가점수 합산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합격(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

◇ 체력시험 합격하였어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 나온 경우 합격취소(별도공고)

## Ⅲ. 서류제출

### 1. 제출일시

- 7. 16.(목) 18:00까지 당일 직접 제출
  - 체력시험 등록(09:00 ~ 09:30) 시 접수대에 제출\*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7. 16.(목) 18:00까지 시험운영본부 또는 인재채용팀\*\*으로 제출

\* 붙임1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목록』과 함께 제출서류 편철하여 제출

\*\* 인재채용팀 주소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행정동 3층

### 2. 제출대상 : 총 22명 (필기시험 합격자)

### 3.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구분	개별서류	공통서류
화학 (소방교)	① 학위(취득예정)증명서(석사 이상) ※ 필요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붙임 3)	
화학 (소방사)	① 군(軍) 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병무청 발급)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구급 (소방사)	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사본) ② 경력증명서(붙임 4)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⑤ 근로계약서(계약직 경우) ⑥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근무처가 폐업한 경우)(붙임 4-1)	
구조 (소방사)	① 군(軍) 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병무청 발급)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자)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 ①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목록(붙임 1)
- ②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붙임 2)
- ③ 도핑테스트 동의서(붙임 7)
- ④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⑤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경력 → 전체경력  
↳ 교통사고·법류위반 → 최근 5년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19. 1. 5. 이후 발행된 원본(자격증 사본 제외)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주(週)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당 근무시간 명시), 직책, 담당 업무, 상벌사항(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비정규직 근무경력 계산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보험건강공단)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계약직 경우)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 인정하지 않음)
-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제출 하여야 함(붙임 4-1)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4. 서류제출 합격자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시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IV. 인성검사**

**1. 인성검사**

- 가. 등록일시 : 2020. 7. 16.(목) 체력시험 종료 후
- 나. 검사장소 : 중앙소방학교 강의동 302호
- 다. 검사대상 : 총 22명 (필기시험 합격자)
- 라.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인성 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V. 신체검사

### 1. 신체검사

가. 제출일자

제출일자	제출방법	제출대상
7. 29.(수) 18:00까지	등기우편 → 7. 29.(수) 소인분까지 인정 직접방문 → 7. 29.(수) 18:00까지	체력시험 합격자

※ 주소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행정동 3층 인재채용팀 / ☎ 32522

나. 검사장소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 (붙임 8-3)

다.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반명함사진 2매(3cm×4cm), 수수료

라. 검사방법 : 지정 종합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따라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수수료 응시자 부담)

마. 제출서식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붙임 8-2)

↳ 확인사항 : 일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불인정

#### <신체검사 주의사항>

◇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19. 7. 28. 이후 발행 신체검사서만 유효**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2.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가. 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 119고시 홈페이지 게시

나. 합격자 결정

- 합격 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붙임 8)

- 불합격 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8-1)

## Ⅵ. 유의사항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장소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수험생과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시험 등록 시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체력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 확진환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별도장소 응시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 1. 서류제출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경력경쟁채용분야의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입니다.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등) 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 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http://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2. 체력시험

-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조장구(기구)만 사용가능 합니다.

※ 탄마가루는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 또한 금지입니다.

※ 악력·배근력 종목에서는 제공되는 반코팅장갑 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험운영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 촬영을 실시하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신체검사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수검하고 7. 29.(수) 18:00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4. 기타사항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와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9고시 홈페이지(<http://119gosi.kr>)에 시험관련 사항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 관련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연락처 : 041-840-6620 (내선 2번)

◆ 응시표 출력 오류 등 원서접수 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주)에스이코리아
- 연락처 : 053-474-1212

- 붙임 1.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목록 1부.
2.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
3.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 4-1.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부.
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 5-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6.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 6-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 6-2.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7. 도핑테스트 동의서 1부.
8.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 8-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 8-2.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8-3.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
9.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10.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11. 체력시험 및 인성검사 장소 안내 1부. 끝.

<붙임 1>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목록

시험명	응시분야	채용계급	응시번호	성명	휴대전화
2020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아래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국가직				제출 확인
		화학 (교)	화학 (사)	구급 (사)	구조 (사)	
1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붙임 2)	○	○	○	○	
2	도핑테스트 동의서 (붙임 7)	○	○	○	○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병역사항 기재)	○	○	○	○	
4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	○	○	○	
5	학위(예정)증명서 (석사 이상)	○				
6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붙임 3)	△				
7	군 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 (병무청 발급)		○		○	
8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	
9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사본			○		
10	경력증명서 (붙임 4)			○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		○	○	○	
12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	
13	근로계약서 (계약직 경우)			△		
14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붙임 4-1)			△		

위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정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보완서류(응시자 미기재)	보완내용
보완기한 : 7. 16.(목)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840-6620, 내선2)	

절      취      선

보완서류(응시자 미기재)	보완내용
보완기한 : 7. 16.(목)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840-6620, 내선2)	

보완요구권자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장

<붙임 2>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주관하는 『2020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병역사항,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소득금액확인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b>단, 채용후보자 등록, 부정행위 관리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5년 간 보유·이용됩니다.</b>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중앙소방학교에서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붙임 3>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대학원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년도 졸업	대학원	학과	전공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중앙소방학교 공고문(2020. 1. 30.)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

년    월    일

**○○대학교 총장(또는 학장)**(직인 날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붙임 4>

## 경력증명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기관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 형태												
				(예시)	2010.12.25. ~2012.12.22.	상근												
				(예시)	2013.01.01. ~2013.12.31.	비상근 주 20시간												
				(예시)	2014.01.01. ~2014.12.05.	시간제 주 10시간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확 인 자 1</th> <th style="text-align: center;">확 인 자 2</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 명</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구 분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_____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b>&lt;작성방법 및 주의사항&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자체서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위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야 함</li> <li>-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li> <li>-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li> <li>-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li> <li>-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li> <li>-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li> <li>-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li> <li>-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li> <li>-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li> <li>- <b>주의사항</b>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붙임 4-1>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 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 (    개월)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생 년 월 일 :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생 년 월 일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 임 : 폐업사실증명서 1부.

<붙임 5>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약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참고사항】**

- 약력, 앞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

<붙임 5-1>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종 목	측정방법 등
<b>악 력</b>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li> <li>○ 측정 단위 : kg</li> <li>○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b>배 근 력</b>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배근력계</li> <li>○ 측정 단위 : kg</li> <li>○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b>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b>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li> <li>○ 측정 단위 : cm</li> <li>○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li> <li>-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li> <li>-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다.</li> <li>-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li> <li>-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li> <li>-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li> <li>※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li> </ul>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제자리 멀리뛰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li> <li>○ 측정 기록 : cm</li> <li>○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li> </ul>
<p>윗몸 일으키기  (회/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li> <li>○ 측정 기록 : 회</li> <li>○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li> </ul>
<p>왕복오래 달리기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li> <li>- 음량이 적당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li> <li>-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li> <li>- 녹음 CD : 별도</li> </ul> </li> <li>○ 측정 기록 : 단위(회)</li> <li>○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li> <li>-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li> <li>-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li> <li>-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li> <li>-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li> <li>-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li> <li>-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li> </ul> </li> </ul>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lt;붙임 6&gt;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http://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 [www.druginfo.co.kr](http://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http://www.kimsonline.co.kr)



<붙임 6-2>

##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_\_\_\_\_

\_\_\_\_\_

\_\_\_\_\_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_\_\_\_\_

\_\_\_\_\_

\_\_\_\_\_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 8>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붙임 8-1>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 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 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u>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u>
13. 눈	<p>가. <u>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u></p> <p>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p> <p>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p> <p>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p>
14. 정신 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p> <p>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p>
15. 혈압	<p>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p> <p>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p>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8-2>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 검 사 내 용

신장		cm		체중		kg		
				혈압				
시력	맨눈	좌:	우:	색신 (색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치아				호흡기질환				
간질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검사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 ] 합격	불합격 또는	
합격여부	[ ] 불합격	합격사유	
	[ ] 판정보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붙임 8-3>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5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전문건설회관 15층 국가건강검진센터	1577-0075
3	국립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4	구포성심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 (구포동)	051-330-3996
5	대동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87 (명륜동)	051-550-9300
6	동래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051-520-5537
7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8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9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10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051-933-7672
11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051-419-7757
12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 광혜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96 (온천동)	051-590-3384
13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14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051-330-3026
15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해운대부민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051-602-8137
16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051-664-4054
17	재단법인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좌천동)	051-630-0421
18	학교법인 춘해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051-608-0271
19	학교법인)동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21	해동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051-410-6700
22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 2가)	053-200-5791
2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053-258-4171
2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053-650-3434
25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053-560-7387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26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053-940-7025
27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053-620-3180
28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33~4
29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062-602-6114
30	충남대학교병원(국가건강 검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6~7
31	대청병원	대전광역시 서부 계백로 1322 (정림동)	042-589-6553~4
32	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114
33	중앙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80번길 10 (신정동)	052-226-1100
34	아주대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2118, 2번선택
35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36	의정부백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031-843-8383
37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38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033-258-2313
39	삼척의료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 (남양동)	033-570-7418
40	원주세브란스 기독교 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033-741-1670~2
41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043-279-0114, 2번선택
42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삼룡동)	041-570-7200
4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녕로 77 (웅진동)	041-962-1111
4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041-689-7000
4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46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5
47	예수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	063-230-1515
48	대자인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0
49	익산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063-840-9120
50	동군산병원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063-440-0370
51	정읍아산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063-530-6140
52	남원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152
53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500
54	나주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061-330-6114
55	성가롤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56	여천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061-690-6000
57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000
58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114

연번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59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75-0005
60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32-8901
61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상동동)	055-733-0000
62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 (두모동)	055-680-8114
63	의료법인 성념의료재단맑은샘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055-731-1240
64	의료법인갑을의료재단갑을 장유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10-6000
65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055-330-6000
66	강일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강일병원)	055-822-0100
67	의료법인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30-0300
68	베데스다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055-384-9901
69	웅상중앙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59 (명동)	1600-7582
7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000
71	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055-750-7123
72	진주고려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진주고려병원)	055-751-2500
73	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055-759-7777
74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칠암동)	055-750-8000
75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52
76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055-214-2050
77	한마음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055-268-7898
78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6012
79	에스엠지연세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055-240-7542
80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41
81	연세에스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055-548-7794
82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359
83	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2
84	한마음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	064-750-9000
8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580
86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064-730-3000
87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701

<붙임 9>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조장구(기구)를 제외한 스파이크 신발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비롯한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0>

##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1. 접수자 인적사항

시험명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분야	
성명		응시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	:

### 2. 정정신청 내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 3. 정정사유

### 4.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중앙소방학교장 귀하

<붙임 11>

## 체력시험 및 인성검사 장소 안내

□ **중앙소방학교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 **체력검사 응시자 및 동행자 동선 안내**

○ 응시자

① 정문통과 후 좌회전 → ② 차량 주차 → 도보 이동하여 ③ 체력시험 등록

○ 동행자

① 정문통과 후 좌회전 → ② 주차장 대기 (화장실은 ⑤ 후생관 1층 이용)

※ 응시자 및 동행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건물 출입을 금지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